



合理的 石油価格 制度의 摸索

李 會 昕

(韓國動力資源研究所 研究委員·經博)

原油価格이 引上될 때마다, 国内石油類製品
価格도 引上될 수 밖에 없다. 製品価格의 引上
을 一時의으로 抑制한다고해서 消費者負担이 輕
減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동안 累積되었
던 費用을 一時에 負担해야 하는 결과를 招來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方法에 의해서 製品
価格을 引上하는 것이 合理的인가? 消費者의
負担을 最小化하고 동시에 供給者에게도 適正의
利潤을 許容한다면 그 価格制度는 合理의 일
것이다. 이러한 基準에 맞추어 볼 때, 現行 価
格制度는 合理의인가? 이 疑問点을 풀어 보고
자 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우선 現行 価
格制度를 간략하게 檢討한 다음 이 制度의 重要
한 構成要素의 하나인 基金制度에 대해 중점적
으로 分析하였다. 여기에는 이 基金制度의 問
題點들이 提示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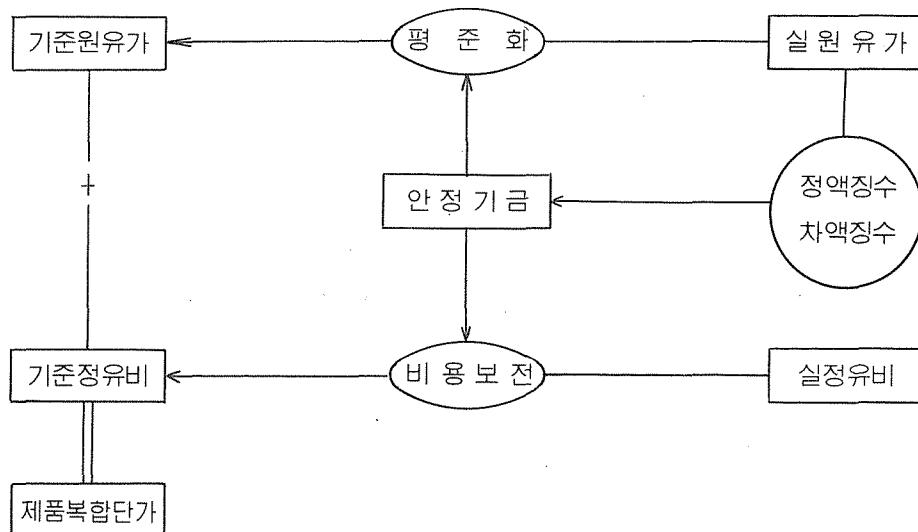
現 行 制 度

石油類製品의 工場渡価格은 投入原油費와 生
產費(利潤包含)의 합이라 볼 수 있다. 이들 費
用의 水準은 各精油会社마다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製品의 最高価格을 어떤 水準에서 정
하든 社別利潤의 幅은 相異하게 된다.

現行 価格制度의 根本의 特徵은 会社間利潤
(혹은 損失)의 차이를 縮少시키려는 政策의 意
志가 内包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政府는 石
油事業基金을 活用하여 基準原油価보다 비싼 原
油를 購入하는 会社에는 補填해 주고, 또한 基
準生產費보다 더 높은 費用이 발생한 会社에 대
해서도 費用의一部를 補填해 주고 있다.

基金活用의 趣旨를 石油事業法에서 는, “石油
의 需給 및 価格安定과 石油開発事業을 効率的

현행 가격결정 제도(공장도)



으로 推進”하기 위한 것이라고 明示하고 있다. 한편 이 基金의 財源은 ① 石油輸入 또는 石油類製品 販売時에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로부터 徵收하는 収入金, 또는 ② 國際原油價格의 顯著한 차이로 인하여 国内精油業者가 取得한 差等利潤中에서 徵收하는 収入金으로 構成되어 있다.

財源의 調達方法을 살펴보면, 備蓄基金은 1980年 8月 24日 以前에는 導入原油의 FOB價格에 3%를 賦課하여 造成하였으나 8月 24日以後부터는 배럴당 1달러를 徵收하는 定額制로 바뀌었다. 石油事業基金은 8月 24日 以前에는 実導入原油價格과 基準原油價格과의 차이 全額을 徵收하여 造成하였으나 현재는 배럴당 1달러를 徵收하는 定額徵收基金과, 原油国内複合單價와 会社別 原油複合導入單價와의 差額을 徵收하는 差額徵收基金으로 되어 있다.

基 金 的 効 果

基金은 備蓄基金과 石油事業基金의 두 가지가 있다. 両基金의 徵收는 基準原油價格의 實質的引上을 招來하기 때문에 製品價格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基金의 役割이 製品價格의 引上을 甘受할 만큼 重要한가? 基金이 이루어고자 하는 趣旨는 重要하지만, 基金이외의 다른 方法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보다 效率적으로達成할 수 없는가? 하는 疑問点을 갖게 된다.

(1) 備蓄基金

備蓄의 重要性과 必要性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舉論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備蓄은 그 性質上 保險과 비슷하여 現時點에서 발생한 備蓄費用은 未来의 어느 時point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損失을 先行費用化하여 그 財源을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保險은 確率을 基本으로 하여 費用을 결정하는데 비해, 備蓄에서는 그렇지 못하므로 適正한 備蓄費用을 策定할 수 있는 客觀的 基準이 있을 수 없다.

備蓄에 諸요한 財源은 어떠한 方法에 의해 造成하는 것이 合理的일까? 이것은 備蓄을 担当하는 主體가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質問과 直結된다. 備蓄이 순전히 市場機能에 의해서만이

루어질 수 있다면 備蓄의 財源은 製品價格의 引上을 통해서 造成될 것이다. 반면에 市場機能上의 盲点때문에 公權의 介入에 의해 備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면 製品價格을 통한 備蓄財源造成은 非合理的이라 할 것이다.

市場機能의 適否를 判定할 때에, 備蓄과 運營在庫는 명확하게 区別되어야 할 것이다. 備蓄이란 運營在庫를 超過한 在庫, 즉 精油會社의 正常의 in 運營에 諸요한 在庫를 超過해서 存在하고 있는 在庫를 말하기 때문에 市場機能에 의해서 確保된 在庫는 그 適正值가 運營在庫水準일 것이다. 이 水準 이상으로 在庫量을 維持하는 것은 企業의 利潤을 減少시키게 될 것이므로 備蓄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市場機能에 의해 달성된 在庫水準과 國民經濟에서 諸요로 하는 在庫水準사이에 차이가 생기는가? 이것은 소위 「free rider」現象의 일부로 설명될 수 있다. 供給의 危機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不安全感에 모두가 在庫를 増加시켰다면, 實제로 供給危機가 발생했을 때 그 衝擊은 在庫水準이 낮았을 때 보다는 훨씬 덜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精油會社들의 個別의 立場에서 본다면 自己會社를 除外한 他精油會社들이 在庫를 增加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언제 있을지 또는 없을 수도 있는 供給危機에 在庫投資를 해야 하는 負擔을 면할 수 있고, 또 만약 供給危機가 발생했다 해도 全體적으로는 在庫가 충분하기 때문에 衝擊에 의한 負擔도 微微할 것이다. 따라서 各精油會社들은 自己會社를 除外한 他精油會社들이 備蓄하기만을 期待할 것이기 때문에 精油會社에 의한 備蓄은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즉 市場機能에 의한 在庫水準은 國民經濟가 諸요로 하는 在庫水準을 下迴하게 된다.

따라서 備蓄은 政府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그 費用은 財政에서 調達되어야 한다. 精油會社로 하여금 備蓄을 하도록 義務화할 때 그 결과가 合理的이기 위해서는, 各精油會社들의 限界備蓄費用이 동일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政府가 備蓄했을 때 발생하였을 限界備蓄費用과도 동일해야 함은 물론이다. 實제로 이러한 條

件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精油会社에 의한 義務的 備蓄은 政府에 의한 備蓄보다 非效率의이기가 쉽다.

현재의 備蓄制度에서는, 精油会社에 의한 義務的 備蓄과 政府備蓄으로構成되어 있으며 政府備蓄의 財源은 備蓄基金賦課에 의한 石油製品価格의 引上을 통하여 調達되고 있다. 精油会社에 의한 備蓄도 결과적으로는 製品価格에 그 費用이 転嫁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備蓄은 모두 製品価格의 引上을 통해 財源이 調達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造成된 備蓄基金은 備蓄의 限界費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現行備蓄制度는 非效率의일 수 밖에 없다. 또한 備蓄基金은 단순히 備蓄財源을 造成하기 위한 方法에 불과하기 때문에, 製品価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財政에 의한 政府備蓄이 보다合理的인 備蓄方法이다.

備蓄基金의 徵収方法으로 흔히 사용되는 用語가 소위「使用者負担原則」이다. 즉 石油의 実需要者가 備蓄費用을 實际로 負担해야 한다는 原則이다. 그러나 石油製品은 그 大部分이 中間財로 使用되므로, 製品価格의 引上은 궁극적으로는 各種消費財와 資本財의 価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를 財貨의 価格은 石油製品 価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石油製品을 많이 使用한다고 해서 반드시 価格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게 된다. 따라서使用者負担原則은 그 意味가 애매 모호해지게 된다.

(2) 石油事業基金

우리나라의 精油業이 市場經濟原則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根本原因是 바로 石油事業基金制度 때문이다. 이 基金制度는 非能率의인 精油会社까지도 補助해 주는 결과를 招來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合理的市場組織의構成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石油事業基金 때문에 政府는 個別精油会社의 損益에 직접적으로 介入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精油会社는 純粹한 民間企業임에도 불구하고 그 損益形成에 稅政과는 별도로 公權이 介入해야 한다는 것은 不合理한 制度임에 틀림 없다.

石油事業基金은 製品価格에 反映되고 있는 基準生產費가 實제의 費用에 비해 너무 낮은 水準에서 策定되었기 때문에, 精油会社의 運營費를 補助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이유가 石油事業基金設置의 主目的이라면, 이 基金을 없애는 대신 그에 該當하는 額數만큼을 基準生產費策定에 反映하는 것이 더合理的이다. 이렇게 되면 各精油会社들은 주어진 価格下에서 利潤을 極大化시키기 위해 最大限의 努力を 傾注하게 될 것이며, 損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企業 스스로가 그에 대한 解決策을 講究하게 될 것이다. 依支할 수 있는 基金이 없어지게 되면 政府로 하여금 自己會社의 損失問題를 解決토록 하려는 依他的 經營姿勢는 終息될 것이다. 基金의 設置에 의해 消費者的 負擔이 輕減될 수 있다면, 그나름대로 存在의 価値가 있겠으나, 消費者負担은 출지도 않으면서 企業의 經營合理화努力만 不必要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得보다는 失이 많게 된다면, 이 石油事業基金의 存在는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